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

상공자원부

1. 개요

'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발효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그간 왜곡되었던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바로 잡고 나아가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 넘치는 자본주의를 구현하여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있다.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에 의해 예고없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동요 등 다소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해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자금의 제도금융권 이탈방지 등 금융 증권 시장의 안정, 사금융권의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특히 영세소기업의 자금애로 타개, 부동산 등 실무부문에서의 투기 억제,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안정

자금인출 등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활용,

유동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인출급증시 증권금융의 시중은행에 대하여 회전신용한도를 활용(현행한도 6,000억원)하며 투신사 및 증권사의 은행차입금은 당분간 상환연기, 신용금고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 단기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제2금융권에 지급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당분간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장·단기 금리의 안정을 도모키 위해 은행에 대한 지준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Call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수신이 견조하거나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회사채 등 채권매수 및 Call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2) 증권시장안정

투자심리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매수확대 등 단기적 시장지지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증시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은 시장추이를 보아며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3) 중소기업 지원대책

가. 신용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관의 법정 보증한도를 향후 6개 월간 확대(긴급명령 제16조)하며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인 것을 기본재산의 30배로 확대할 것이다.

소액보증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확대하며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의 범위까지(종전에는 매출액의 1/2)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의 1/2까지(종전에는 매출액의 1/3) 확대할 예정이다.

나. 긴급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운전자금』 3,000억원을 배정(8. 13)하고 '93. 8.16~9. 15(1개월)까지 지원시한을 정하여 3개월간 지원할 것이다. 기배정된 자금의 소진추이에 따라 필요시 3,000억원을 추가 배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자금 830억원을 배정(8. 13)하고 지원추이와 지역경제동향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토록 하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자금에 대해서는 기보증 잔액에 불구하고 연간매출액의 1/4까지 신용보증하되 제3자연대입보 면제, 중소기업 전담은행외의 시중은행에서도 위탁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영세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지원자금』 공급

영세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자금』 2,000억원을 공급키로 하고 사채시장 또는 제2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상 애로가 있는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각 1,000억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93. 8. 16~9. 15(1개월)까지 지원시한으로 3개월 동안 제조업체 5,000만원 이내, 기타업체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용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함께 처리하여 3,000만원까지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보증, 5,000만원까지는 연간매출액의 범

위내에서 보증, 기보증잔고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간이 보증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단,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발생시 재정에서 전액보전할 계획이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20인이하 기업 확인용),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필요시), 기타 대출부실화의 경우에도 고의 중과실외에는 취급자 면책이 된다.

라. 신용금고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 확대

신용금고가 할인한 어음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재매입 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1,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입대상어음은 만기일 120일 이내의 어음으로 하며 매입기간은 '93. 8. 16~9. 15(1개월간)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금고의 신규할인어음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신규지원 자금이 확대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마. 부도처리 절차의 완화

부도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완화키 위해 적색 거래처 등록후에도 30일간 신규여신 취급중단,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회수 등의 조치를 유예할 것이다.

당좌거래 정지처분 해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영업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등에 대해 당좌거래 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자금 조기집행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및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융자, 출연 예산의 자금 미배정분을 조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사.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중소기업 전담은행 예치 확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적극 예치하여 중소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고 상공자원부에서는 산하 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에 우선적으로 예

치토록 8월중에 조치할 예정이다.

아. 중소기업 애로점검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 실무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 동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애로신고 전용전화는 502-1144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애로실태 특별점검반』을 재무부에 설치, 운영할 것이다.

4) 부동산 등 투기억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8. 14)키로하고 시행기간을 '93. 8. 17~11. 23까지로 하고 추가 지정면적은 53,774km², (합계 93. 116km³, 전국토의 93.8%)이다.

기존 건설부 거래동향감시반 중 지가동향감시반을 신규편성, 운용(8. 14)과 부동산 등 실무부문과 관련한 종합세무대책을 수립(8. 17)하여 부동산투기대책반을 설치하여 부동산 가격, 거래동향 파악 및 자금출처조사, 중견화가 이상 예술가, 주요 창작예술품, 골동품, 보석판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를 실시(8. 25~10. 25)할 계획이다.

5)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가. 개인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강화

개인 해외송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국세청 통보기준을 강화(8. 13)하여 종전 연간합계 1만불이상을 1회 3천불이상 또는 연간합계 1만불이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다.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시 해외송금 필요사항(인적사항,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고액원화수표, 여행자수표 등의 휴대반출 방지를 위한 통관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세금탈루, 불법해외유출 혐의

자에 대해 자금추적 등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나.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시강화

'93년 8월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허가·승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 위해 해외주재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다. 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규제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지급경비, 과다계상 등 불법 재산도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출입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밀 검토대상으로 종전 실적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수입되는 수입거래, 과다한 로얄티, 기술용역비, 수수료 등 무역외 지급인증으로 송금되는 거래, 저가수출 등에 의한 재산의 해외도피혐의가 짙다고 인정되는 수출거래를 정밀 검토할 것이다.

6) 고액현금인출 등에 대한 조사

실명전환 의무기관(2개월)중 고액현금 인출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금융계좌별 순인출액 3천만원초과 고액현금 인출자, 실명전환 계좌별로 다음 금액 초과자, (20세 미만(미성년자) : 1,500백만원, 20~30세 미만 : 3,000만원, 30세 이상 : 5,000만원) 기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매매, 원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점포별 월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 및 정밀조사는 세무서장은 해당자의 인적사항, 직업, 소득상황, 사업자인 경우 사업내용, 인출액 등을 종합분석하여 증여 및 부동산투기혐의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자료 검토후 실지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